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2. 1. 13 선고 2019가단2098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남로 담당변호사 정다정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표

변 론 종 결 2021. 11. 25.

판 결 선 고 2022. 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20.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43,000,00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와 법률상 부부였는데, 원고는 C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6드단5171), 위 소송은 2017. 8. 11. 변론종결되었으며,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은
2017. 12. 8. ‘원고와 C는 이혼하고, C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C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와 C가 항소하였는데[대전가정법원 2017르11364(본소),
2017르11371(반소)], 위 항소심 진행 중 2018. 5. 14. ‘원고와 C는 이혼한다. C는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2018. 8. 31.까지 지급한다. 쌍방은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일체의 재산상청구권(위자료, 재산분할 포함)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는 2017. 11. 20. 피고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11.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43,000,000원,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의 C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허위로 채무를 부담한
것이거나, 또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한 허위의 채무가 아니며, 위 계약 당시 C가
채무 초과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고로서는 사해행위라는 인식이 전혀 없어 선의이다.

3. 판단

가. 허위 채무 여부에 관하여

C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피고와 사이에 허위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2) 채무자인 C의 무자력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6, 8,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7. 11. 20.을 기준으로 C의 적극재산은 부동산¹⁾ 302,002,900원(원고는 별지목록 제5항 기재 토지의 가액이 118,76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7. 2. 16. 기준 위 토지의 가액은 133,605,000원으로 감정되었고, 2017. 11. 20.까지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금채권 66,126,296원, 보험금채권 38,761,621원, 출자금반환채권 5,000,000원, 자동차 5,000,000원, 기타채권 186,752,800원²⁾ 등 합계 603,643,617원이고, 소극재산은 E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85,608,278원, 원고에 대한 채무 200,000,000원, 피고에 대한 채무 110,000,000원 등 합계 395,608,278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의하면 C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C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덕

별지

목 목

1. 충청남도 부여군 대 149㎡
 2. 충청남도 부여군 시민백화초기화지방단층주택
59.50㎡
 3. 충청남도 부여군 전 604㎡
 4. 충청남도 부여군 전 450㎡
 5. 충청남도 부여군 답 2,969㎡
- 합.

1) 이 사건 부동산과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의 미등기 주택 및 창고,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지상의 미등기 건물 및 충남 부여군 D 토지의 2/10 지분을 의미한다.

2) C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2018. 1. 30. 입금된 36,752,800원, 2018. 2. 5. 입금된 150,000,000원의 합계액이다.